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2023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일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선박에 관하여 2021.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은 145,694,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69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7. 8. C와 신용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9. 7. 9.부터 2022. 7. 9.까지, 대출예정금액 2억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9. 7.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로 D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C는 2020. 10. 30.부터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1. 4. 27. 대손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4. 29. C의 D은행에 대한 채무 171,802,3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C는 2021. 1. 26.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 2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21. 2. 23. E조합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6,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나주혁신도시지점에 대한 2022. 3. 21.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2022. 3. 3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E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선박의 가액 상당인 145,694,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5,694,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선박이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피고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2, 7 내지 10, 1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F조합 신지지점(G), H 주식회사 경남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C는 2017. 7. 16. J(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J의 대리인 K)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C가 J의 D은행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선박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되, 잔금 지급일은 추후 상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한 증인 I은 '피고와 피고의 남편 L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명의는 C로 하였으며, 피고가 2,000만 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부탁을 받고 K에게 대금지급일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C는 2018. 4. 6.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쳤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K에게 2020. 3. 9. 300만 원, 2020. 3. 16.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딸 M 계좌를 통해 2019. 7. 31. 1,000만 원, 2019. 9. 11. 1,000만 원, 2020. 4. 9.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J은 2019. 5. 13. H 주식회사 경남본부에 C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한 N은 채권추심을 위해 C와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 또는 L에게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M 명의 계좌를 통해 O 계좌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고, K 계좌로 6,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0. 5. 28.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고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난 2020. 7.경 C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선소유권변경등록 신청을 하였고, 2020. 7. 7.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는 여전히 C인 상태에서 원고와 D은행이 C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선박을 가압류하였고, 완도군은 2020. 11. 30.경 선박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변경 없이 어선소유권변경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권자를 C로 정정등록하였다.

⑥ 원고와 D은행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각 가압류는 2020. 12. 24. 말소되었고, C는 그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21.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증여하였다.

⑦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C가 면세유류를 구매한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피고는 2020. 7. 23.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면세유류를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증여한 행위는 명의수탁자인 C가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선박의 종류와 명칭 : 동력선

선적함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선체재질 : FRP

총톤수 : 29톤

기관의 종류와 수 : 디젤기관 608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추진기 1대

진수연월일 : 1995. 11. 28.

끝.

